

韓·美 通商 협상 一括 타결… 그

내년부터 保護될 物質特許와 소프트웨어를

I. 物質特許 · SW

내년 7月부터 保護

韓·美 양국은 美國의 通商法 301條 발동에 따른 保
險 및 知的所有權 등에 대한 通商 협안을 一括타결하는
한편 韓國이 담배 輸入을 오는 9月부터開放키로 合意
했다고 지난 7月 21日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發表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月부터 國內에서 양담배가 市

販되고, 내년 7月부터 外國出版物의 무단복제나 번역이
금지된다. 또 내년 7月부터 外國의 物質特許와 소프트
웨어가 保護받게 되며 國내에 진출한 美國 손해보험회
사들의 火保 참여가 허용된다.

政府는 7月 21日 각 소관부처 별로 이같은 협안타결
내용을 發表하고 開放스케줄에 맞는 法改正등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主要分野別 合意事項중 物質特許와 소
프트웨어 分野는 다음과 같다.

◎ 韓·美 협상結果 대비표 ◎

구 분	미 국 측 입장	우리 나라 측 입장	타 결 내 용
特 許	△ 法改正	86년 3월까지 法개정 및 86년 중 시행	86년 9월 개정안 제출 및 87년 7월 시행
	△ 특허기간	현행 12년에서 5년 연장	3년 연장
	△ 이용발명에 대한 강 제설시 규정	삭 제	재량권 축소조정
	△ 불실시에 대한 강제 실시 규정	삭 제	"
	△ 소급효	法上 소급효 인정	불 가
	△ 미생물에 관한 부다 페 스트條約	즉각 가입	단, 쌍무적으로 개정법시행 일 현재 한국에 출원중인 제 법특허에 대한 물질특허 보 장 인정 80년 1월 1일 이후 美國에서 특허를 받고 韓國과 美國에 서 시판되지 않은 품목에 대 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보호 우리 나라 입장 관철
著作 權	△ 法改正	86년 3월 국회 상정 및 86 년 중 시행	86년 9월 국회 제출 87년 7월 시행
	△ 국제협약가입	86년 중 가입	88년 초 가입
	△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상 보호	연구검토

背景과 對應策

中心으로 집중 分析

編 輯 室

및
 소프트웨어

△ 반도체칩	저작권법상 보호
△ 음반보호	보호기간 50년 및 저작 본권 인정
△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포함 보호
△ 소급효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법상 소급 보호 인정(20년)
△ 행정규제대상	번역 및 改作포함

盛夏特輯

■ 目 次 ■

- I. 物質特許 · SW 내년 7月부터 保護
 - II. 韓·美 通商협상 —括타결의 背景
 - III. —括타결의 國內파급效果와 對應策
 1. 物質特許
 2. 소프트웨어
 - IV. 物質特許 保護와 技術開發 戰略
- <이번號에 全載>

연구 검토	우리나라 입장 관철
현행 음반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보호	20년간 저작인접권으로 인정
별도 입법	별도 입법으로 하되 저작권법 과 동등수준 보호
불가	단, 행정지도를 통행 서적의 무단복제만 규제(10년)
불가	우리나라 입장 관철

II. 韓·美 通商협상 —括타결의 背景

지난해 9月과 10月 두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保險 및 知的所有權에 대한 美國의 通商法 301條 활동에 따른 韓·美간의 무역마찰은 우리측의 담배 輸入開放이라는 데이 불어 —括 타결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物質特許의 외국의 著作權을 保護해주고 美國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진출 허용등이 주요골자로 이루고 있다.

어찌보면 우리측의 일방적인 양보로 끝난 셈이다. 그러나 협상의 성격 자체가 양보를 위한 협상이었고 다만 美國의 요구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버티느냐 하는 협상이었기 때문에 큰 줄거리는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美國이 韓國에 대해 市場開放要求를 해온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對美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이기 시작한 70年代 후반부터 시작했으며 흑자폭이 커지기 시작한 지난 83년 이후 더욱 強化되었다.

더구나 美國은 최근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천5

백억달러(85년기준)로 늘어나면서 議會등의 輸入규제 압력이 強化돼 왔다. 이에 대해 레이건행정부는 輸入규제의 保護貿易보다는 모든 나라가公正한 조건으로 교역을 해야한다는 소위公正貿易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대응해 왔다.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가 通商法 301條의 활동이다. 교역상태국의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 調査를 해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와 관련이 있는 어떠한商品에 대해서도 輸入을 규제할 수 있도록 制度의 보복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通商法 301條이다.

또한 通商法에서는 이러한 301條활동과 함께 輸入 규제 등 보복조치를 하기전에 당사국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있다.

美國은 지난해 9月과 10月 두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保險 및 知的所有權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調査하겠다고 발표했다. 그후 韩·美 양국은 이 분야에 대한 美國의 요구등을 토대로 협상을 벌여왔으며 10여 개월의 협상끝에 합의된 것이 이번 발표내용이다.

美國의 일방적인開放要求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은 우선 美國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輸出市場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對美輸出은 지난해 1백8억달러로 우리 나

라 전체 輸出의 36%를 차지해 3분의 1을 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美國은 인구 2억 5천만명에 연간 輸入額이 3천 5백 억~4천억 달러 규모의 巨大 市場으로 앞으로 最大 輸出市場으로서 巨大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협상은 第1의 輸出市場인 美國의 開放要求를 수용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에 대한 得과 失을 따져보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어느정도 수용하게 된 것은 美國의 對韓이 미지개선을 통해 美國의 輸出市場을 효율적으로 유지함으로써 得이 클것이라는 判斷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對美무역흑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측의 방어명분이 약화된 점도 있다. 지난 83년 18억 달러였던 對美무역흑자가 지난해에는 43억 달러로 늘었고 금년에는 상반기에만도 32억 달러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의 美國 분위기는 무역보복에 대한 주장이 갈수록 거세져 왔다. 이는 오는 11월의 중간선거를 의식한 議會와 행정부의 공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하나 共和黨 정부로서는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韓·美협상이 더욱 장기화될 경우 美國의 또 다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크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對美輸出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짐에 따라 우리측이 타결을 서두르게 됐다. 어찌보면 담배 수입개방 시기 선택에 있어서, 이왕 들어줄 것이라면 시기를 앞당겨 美國정부의 체면을 세워주는 식의 선제 공격으로도 볼 수 있다.

또 美國은 第2期 一般特惠關稅制度(GSP) 적용과 관련, 韓國을 수혜 대상에서除外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GSP수혜에서 제외될 경우 우리輸出에 큰 타격을 주게된다. 우리에게 씌워진 올가미가 너무도 많다.

우리측으로 보면 모든 분야의 輸入開放이나 知的所有權保護등은 美國의 압력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볼때 불가피한 과제들이다. 다만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만이 우리의 선택권이라고 본다면 이런 협상결과는 충격을 잘 흡수하고 機會를 활용한다면 우리경제에 또 다른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해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경제는 전체적인 국제수지흑자시대를 맞게 됐다. 美國에 대한 市場開放이나 物質特許保護등의 여건변화가 아니더라도 기업환경이나 국민생활의 여건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변화의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건실한 經濟

發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開放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지혜를 모으는 길밖에 없다.

III. 一括타결의

國內파급 効果와 對應策

1. 物質特許

韓·美通商협상 결과 우리나라도 내년 7月부터 物質特許制度를導入키로 함으로써 新物質開發能力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 있는 국내업체들은 외국에서 新開發物質을 들여올 때마다 特許使用料를 추가로 물어야 하게 됐다.

韓·美간에 타결된 物質特許制度導入의 주요내용은 △ 87年 7月 1일부터 物質特許制度를導入하며 △ 特許期間은 特許公告日로부터 15년간으로 현행 국내 製法特許期間보다 3年 연장하고 △ 特許權者가 新物質제공을 거부할 때는 우리 정부가 쌍방간 조정을 거쳐 제공을 명령(강제실시)하되 그 대상은 당해 物質을 바탕으로 새로운 物質의 發明(利用發明)을 피하는 경우에 한하며 △ 美國에 대해서는 物質特許를 일부 소급적용한다는 것이다.

特許廳은 내년 7月 物質特許가導入되더라도 외국인의 特許出願에 대한 審查(3~4년), 독성검사등을 거쳐 生產, 市販까지는 모두 8~1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90년대 중반부터 연간 1천만달러 가량의 추가부담을 국내업체가 지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業界는 “정확한 계산은 하기 어렵지만 추가부담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이것 말고도 技術先進國과의 각종 상담에 있어서 우리측이 열세에 끌리는 등 기술에 속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模倣行爲가 금지됨으로써 앞으로의 개발능력과 잠재력을 키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精密化學部門의 中小企業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다.

業界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研究員數는 인구 1천명당 0.8명(83년)에 불과, 技術先進國의 1.4~2.8명(79년)에 비해 크게 뒤쳐 있고, 賣出額對比 研究開發費投資도 의약 1.5%, 농약 3%, 염료 1.4%, 화장품 1% 등 평균 1.6%로 이것 역시 기술선진국의 8~12%에 크게 뒤쳐 있는 등 국내精密化學工業이 초보단계에 있다고 지적해왔다.

業界는 이에 따라 物質特許의 조기導入은 국내관련업계에 큰 충격을 주게될 것이라며導入시기를 2000년대 이후로 미루거나導入하더라도 국제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측은 韓·美간 무역마찰을 해소해야 한다는 대전제외에도 국내업계의 新物質개발 노력증대 유인제공, 선진국형 特許制 실시 등 物質特許導入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의 韩·美간 物質特許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은導入시기와 소급효 인정문제. 그중에서도 소급효문제는 국내업계의 강력한 반발속에 협상이 진행됐다.

美國측은 韓國特許廳에 계류중인 製法特許出願을 物質特許出願으로 인정하도록 法을改正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나라측은 “소급효 인정은 新物質에 대한 特許 인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급입법을 금하는 국내법 체계에 정면위배된다”며 不可를 주장해 왔다.

特許는 ‘새로운 物質의 發明’에 대한 權利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이에 관한 소급적용은 세계적으로同時的인 ‘새롭다’라는 의미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韩·美간 쟁무협정으로 내년 7月 1日 현재 우리나라 特許廳에 계류중인 製法特許出願을 制度導入 이후 90일間의 申請期間을 주고 物質特許出願으로 전환토록 허용한다는 선에서 타결됐다.

81년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製法特許를 出願, 현재 계류중인 것은 모두 3천여건. 그중 1천 7건이 美國人이 出願한 것이며 이 가운데 3백여건이 美國에서 이미 物質特許를 취득한 것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物質特許로 전환, 保護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계전문가들은 정부에서 美國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加入한 파리條約의 동등 대우규정에 따라 파리條約에 加入한 다른 나라들이 美國과 똑같은 소급효인정을 요구해올 경우 쟁점이 될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80년 이후 美國에서 物質特許를 받고 현재 제품이나오지 않은 新物質에 대해서도 국내약사법·농약관리법에 의한 행정지도를 통해 소급보호해주는 것으로 타결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美國측 협상관계자는 ‘한줌에 들어올만

한 정도(Handful)’라고 표현함으로써 10여건 이내의 소수에 이를 것임을 암시했다.

이들 新物質에 대해서는 美國측의 요구에 따라 양국 심사위원회가 물질별로 審查하여 여기서 보호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내업자가 이들 등록의 생산 시판에 관한 등록 허가 신청시 보사부·농수산부등에서 국내업자에게 美國측 特許權者와 협의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對美소급효 인정으로 物質特許는 사실상 81年에導入된 셈”이라며 美國측이 어떤 物質에 대해 特許를 요구하고 나설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협상에서는 美國측이 올해안에導入토록 요구했던 微生物特許를 내년 7月 物質特許와 함께導入하고 부마페스트條約에도 내년 중加入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국내 제약·농약·화장품등 경밀화학관련업계는 이같은 전격적인 타결과 관련, 반성의 빛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研究開發은 물론 特許權에 조차 무관심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다.

新物質이라고는 차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아라미드펄프’로 美國에서 物質特許를 따낸 것이 유일한 기록인 우리나라 연구진들도 物質特許導入에 따른 장기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研究開發에 힘쓰는 것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업계는 소급효인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制度의 뒷받침을 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2.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著作權의 차원에서 保護한다는 이번 韩·美합의 결과에 대해 국내소프트웨어 業界는 발전의 쪽이 짓밟혀 외국의 기술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국내 소프트웨어 產業의 발전을 촉진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우려하는 측에서는 국내소프트웨어 产业이 불과 4,5년의 짧을歷史를 갖고 있는 유치한 단계이기 때문에時機尚早의 소프트웨어 保護法이 외국의 소프트웨어만 保護해주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이 保護法의 활동으로 국내에서 研究開發된 소프트웨어가 보호를 뿐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한다는 좋은 인식을 심어주에

그동안 꺼려해오던 외국업체로부터도 필요한 技術導入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의욕이 높아지며 기술발전이 피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權利를 보장해준다는 주요 내용을 보면 △ 著作權法과는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을 制定해 87年 7月 1일부터 施行하되 실제 외국인의 프로그램 보호효력은 우리나라가 國際著作權協約(UCC)에 加入하는 87年 9月 1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 보호대상 컴퓨터프로그램은 大韓民國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이거나 또는 國際協約등에 따라 大韓民國이 保護할 의무를 지는 국가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 프로그램을 創作하는 과정 또는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프로그램 자체에 한한다는 것.

또 著作權의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權利를 保護해주는 프로그램 著作者는 성명표기 및 공표 그리고 형식과 내용의同一性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작人格權을 갖는 한판 著作財產權으로 版權·개작·번역·배포·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권리존속기간은 50年으로 한다는 것.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되 다만 무단복제가 문제시되는 경우 美國내에서 著作權을 획득한 프로그램만 범시행 5년전부터 개발된 것까지 소급, 행정지도를 통해 억제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소프트웨어의 保護는 著作權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美國측의 요구와 국내의 주장도 있었으나 별도입법이 소프트웨어를 문화적 創作物보다는 경제재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다소 보호차원에서 신축성을 들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소프트웨어 保護에 관한 別途立法은 현재 우리나라뿐으로 著作權法에 의한 보호경향이 世界的인 추세이다.

60年代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對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85대 15에서 80년대에는 20대 80으로 역전했고 90년대에는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專門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종래 컴퓨터를 購入하면 하드웨어에 끼어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販賣하면 때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소프트웨어 市場規模는 年間 약 1억3천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1억달러(최소 5백억원에서 최대 9백억원까지) 규모는 国內技術로 자체 開發되어 販賣되는 소프트웨어이고 약 3천만달러(이중 6백만~7백만달러는 하드웨어값에 포함된 것)어치가 輸入되어오는 것으로 業界에서는 추정한다.

프로그램 保護法이 發効되어 國內業界가 추가로 代價를 지불해야 할 액수는 정확히 調查되어 있지는 않지만 순수 輸入規模의 3.5배 내지 5배로 專門가들은 추정했다. 額數로 치면 8천3백만~1억2천만달러이다. IBM이 85년에 國內에서 복제한 것으로 추정한 소프트웨어 값은 2천만달러. 이 정도는 적어도 國內業界가 추가 부담해야 할 額數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業界가 이미 정당한 代價를 주고 外國 소프트웨어를 使用하고 있기 때문에 業界에 주는 타격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業界的 견해는 이와 다르다.

業界는 선진소프트웨어 기술국인 日本에서도 올해부터 著作權에 포함시켜 保護하고 있으나 우리 국내 소프트웨어 產業이 아직도 결음마 단계에 있음을 強調하고 있다.

따라서 UCC 加入을 늦춰서라도 이 法의 施行을 되도록이면 지연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V. 物質特許 保護와 技術開發 戰略

우리는 이제 複製技術의 時代를 청산하고 創作技術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앞에 서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物質特許·著作權·컴퓨터 소프트웨어 權 등 知的所有權이 保護를 받게됨에 따라 우리는 外國에서導入한 技術을 흡수—응용하는 단계에서 응용—創造로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하는 기술개발의 새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物質特許가 실시되는 醫藥·農藥·염료 등 精密化學工業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는 国내 어느 산업보다도 앞서서 自己完結의 技術을 開發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다. 精密化學工業분야는 기초원료—중간화합물—原劑—完製品으로 이어지는 生產工程의 일관성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과감한 技術革新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술의創造는 모든 人間의 創作활동에 대해서 배타적인 듅점권을 인정하는 國제經濟사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이며 동시에 國富의 신장을 가름하는 관건이다. 인류의 創作의인 지식과 지혜를 認定·保護하는 것이 바로 知的所有權이다. 國제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技術保護主義는 나날이 고조되는 추세이며, 여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전략은 先進技術導入 못지 않게 自力技術을 키우는 일이다.

그래서 상황적 변화에 대한 국민의 認識전환이 필요

하고, 技術開發의 당면한 과제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未來指向의 인 우리의 姿勢라고 본다. 技術의創造的開發을 위해서는 技術研究開發投資를 늘리고 科學技術研究人力을 충분히 양성하는데 國民적인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技術開發에는 많은 시간과 풍부한 자금이 소요되고 성공여부에 대한 危險부담도 수반된다. 그러나 다른 치름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研究開發投資와研究人力養成의 두가지 研究資源확충을 우리는 強調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製造業의 賣出額에 대한 研究 및 開發의 投資比率은 1.27%이다. 이에 비하여 先進國인 美國은 2.84%, 日本은 2.31%이다. 특히 기술집약도가 높은 知的所有權분야의 精密化學工業은 美國이 5.39%, 日本이 5.23%이다. 우리는 1.66%로 그들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研究開發의 절대금액은 美國의 1백10분의 1에 불과하다.

研究開發을 담당하는 高級頭腦인력 역시 크게 뒤쳐 있다. 우리는 인구 1만명에 8명인데 비해 美國은 32명, 日本은 29명이다. 研究人員의 총수로 보면 우리는 美國의 2백 분의 1, 日本의 1백 10분의 1 수준이다.

技術研究開發의 성과를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국내의 技術創造 활동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美國은 83년 다른 나라에 12만건의 工業所有權을 出願했다. 日本도 5만건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2백건에 불과하다. 韓國과 같은 수준의 신흥공업국인 브라질 및 멕시코와 대비해서도 10~2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내년부터 物質特許가 실시되는 精密化學工業은 단 1건의 海外出願밖에 없는 실정이다. 84年 국내에 出願된 發明特許도 87%가 外國인 것이다.

우리가 技術開發을 強調하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技術革新의 原動力인 技術開發投資를 확대하고 해심과학 技術頭腦를 양성하는데 앞으로는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物質特許도 特許權인 만큼 發明者에게 그에 상응하는 代價가 지불되어야 한다는데는 异議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 분야의 국내기술이 취약하고 있는 관련기업의 자본구조가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기 때문에 特許導入시기를 가능한 한 늦춰보려는게 우리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제 特許導入에 합의함에 따라 국내 관련업체가 연간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는 6백억원으로 試算되고 있다.

美國의 物質特許와 著作權 그리고 소프트웨어 權을 협용하거나 保護해 줄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國民經濟의 死活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商品輸出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大」를 위해서 「小」를 희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또한 필요하다.

이번 韓·美 通商협안의 타결을 전기로해서 정부가 80年代 들어 추구해오고 있는 「技術立國」의 실현에 모든 國民의 同參이 있어야겠다. 知的所有權분야의 技術과 尖端기술의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產·學·研의 기술개발 분담체계가 바로 定立되어야 한다. 產業體는 응용技術開發에, 理工系대학은 기초과학연구에 그리고 研究機關은 創作技術開發에 가일층의 努力を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분담체계의 効率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國內企業은 賣出額증가 속도에 비례해서 技術研究開發投資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美國의 지방회사에 불과 했던 하이로드社가 매출액 1천만달러 규모에서 5백만달러를 投資해서 제록스複寫機를 개발하는데 成功함으로써 세계적인 大企業으로 성장한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大學教育過程은 물론 高等學校 教育도 과학기술강화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國내企業의 신입사원 채용비율은 인문계 20%, 자연계 80%인데 대학의 인문계와 자연계 학생비율은 46%대 54%이다. 사회의 人力需要에 부응하는 교육제도의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요가 없는 고급인력의 배출은 교육의 참뜻에도 어긋나며 국가적으로도 國力의 낭비라고 생각한다.

研究機關은 새로 企業화할 수 있는 創造的 技術을 開發해야 하며 先進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研究人力의 海外研修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臺灣은 5年間 5백명의 과학인력 해외연수계획을 시행해 왔고 이미 2천5백명의 고급두뇌를 그 계획으로 확보해 놓고 있다. 우리의 2백명 규모의 배가 넘는다.

정부가 지난 7月 시행한 工業發展法에 따라 企業의 研究機關에 공업기반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時宜을 염은 적절한 조치이다. 당국은 稅制·金融면에서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하는 간접 유도방식을 꾸준히 밀고 나가기를 바란다. 技術開發에 적극적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技術立國의 실현이 가능하며 90年代 先進工業社會로進入할 수 있기 때문에 技術革新에 전 國民의 참여가 있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完〉

〈整理：編輯者 王然中〉